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9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이성윤·조계원·허종식

이재강 · 강준현 · 맹성규

김태년 • 추미애 • 양부남

민병덕 · 장경태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로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보호가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이용자정보는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거칠 필요 없이 요청기관의 내부결재만으로 그 제공 요청이 가능하고, 제공 사실의 통지도 장기간 유예할 수 있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제공받은 통신이용자 정보는 약 2,552만 건으로 한 해 평균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에 해 당하는 51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어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조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영장주의 위배의 문제, 제도 남용의 위험 등을 지적한바 있으며,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2015년, 2023년 통신 이용자정보제공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음.

이에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여 통신사실자 료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제한조치, 가입자정보 및 통신사실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안전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이용자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 (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 나. 통신이용자정보의 불법제공을 금지하고, 불법적으로 제공된 경우의 증거사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3조, 제4조, 제13조의5).
- 다.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적법성을 법원에 심사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 (안 제12조의3 및 제13조의6).
-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이용자정보의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함 (안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마.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의2. "통신이용자정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이용자의 성명
 -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 다. 이용자의 주소
 -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 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 知得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 를 "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사실이나 그 내용 및 불법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나 그"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3(당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9조의2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허가서를 발부한 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청구한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청구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및 관련된 자료의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수사"를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로 하며, 같은 항및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각각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폐기"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폐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을"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사실"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서"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때에는"으로,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서등"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공한 날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공요청기관"을 "제공요청기관, 주요내용, 사용목적, 요청사유"로, "서면으로"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등 전자적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사유
- 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제13조의3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에도"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를 "3개월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 5.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

- 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의6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6항에 따른 파기사실을 통신사실확인 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의 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을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하 후단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으로 한다. 제13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당사자의 권리보호)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등"으로 한다.

제15조의3 중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의 제공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第2條(定義)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의2. "통신이용자정보"라 함</u>
	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u>가. 이용자의 성명</u>
	나.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다. 이용자의 주소
	라. 이용자의 전화번호
	마.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
	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u>말한다)</u>
	바.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
	<u>지일</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第3條(通信 및 對話秘密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法과 刑事訴訟法	①
또는 軍事法院法의 規定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	
전기통신의 감청 <u>또는 통신사실</u>	<u>및</u> 통신사실확
<u>확인자료</u> 의 제공을 하거나 公開	인자료 또는 통신이용자정보(이

되지 아니한 他人간의 對話를 녹음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 다 만,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당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 5. (생략)
- ②·③ (생 략)
-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대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第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不法檢閱에 의하여 취득한 郵便物이나그 내용 및 不法監聽에 의하여知 또는 採錄된 電氣通信의대용은 裁判 또는 懲戒節次에서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이라
<u>한다)</u>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第4條(不法檢閱에 의한 郵便物의 내용과 不法監聽에 의한 電氣通 信內容의 증거사용 금지) ----

-- <u>내용,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u> <u>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사실이</u> <u>나 그 내용 및 불법제공된 통신</u> <u>사실확인자료등이나 그</u> -----

제12조의3(당사자의 권리보호) ①
제9조의2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허가서를 발부한법원에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의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다만, 심사를 청구한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심사한다.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 📗 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 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 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한 자는 청구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 및 관련된 자료의 청취 •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심사 청구에 필 요한 범위에서 청취·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 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
- 제13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①------- 피의자가 죄 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 황이 있는 경우 -----
 - -----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 료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의 제공----.
 - ② (현행과 같음)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신 | ③----- 통신사 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u>통신사실확인자료를</u> 제공 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 체 없이 제공받은 <u>통신사실확인</u>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 항에 따라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 공을 받은 때에는 해당 <u>통신사</u> 실 확인자료제공요청사실 등 필 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u>통</u>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 여야 한다.

⑥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3항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의 제공
4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u>
통신사실확인
자료등을 폐기
5
통신사실확인자료등
의 제공을 통신사
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사실
<u>통</u>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
서
6

에 따라 <u>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u> 요청허가청구를 받은 현황, 이 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 를 보존하여야 한다.

⑦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 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 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통신사 실 확인자료 제공사실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등 관련자 료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 다.

⑧ (생략)

⑨이 조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범죄수사를 위한 <u>통신사실</u> 확인 <u>자료제공</u>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 여는 제6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 제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 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7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
<u> 공한 때에는</u>
<u>해당 통신사실</u>
확인자료등의
<u>통신사실</u>
확인자료등의 제공요청서등
<u>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제</u> 공한 날부터
<u> 8 연 원구니</u>
· ⑧ (현행과 같음)
9
통신사실확인
자료등의 제공
<u>.</u>
]13조의2 <u>(법원에의 통신사실확</u>
인자료등의 제공)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에게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u>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지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3조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기간 등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선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
<u>코</u>
∥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의 통지)
①
제공요청기관, 주요내
용, 사용목적, 요청사유
<u>서</u>
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u> 방법으로</u>
1. ~ 3.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3조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의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
용자정보의 제공 대상이 된 당
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u>한다.</u>
1.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u>사실</u>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 │ ③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항 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 | <삭 제> 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 3.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요청 사유
- 4.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 5.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짜
- 에도 ----
- --- 3개월의 범위에서 -----

- 1. ~ 4. (현행과 같음)
- 5. 질문 · 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3 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미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사 처검사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미리 수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 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 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 항에 따른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 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 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 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 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 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u>(5)</u>		제3
<u>항</u>		
<스	<u> 제></u>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3조의6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보호 또는 공소제기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신 설>

- 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통신사실</u>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 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u>통신사실</u>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 ②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 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u>통신사</u>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u>통신사실</u>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 ③ <u>통신사실확인자료</u>의 폐기 및 관련 자료의 비치에 관하여는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6
항에 따른 파기사실을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을 통지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7항
<u>통신사실확인</u>
<u> 자료등의 제공</u>
,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등의 제공 절차
<u>=</u>) ①
통신사실확
인자료등의 제공
.
2
통신사
실확인자료등의 제공
<u>.</u>
<u>통</u> 신사실확인
자료등의 제공
③ <u>통신사실확인자료등</u>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 다.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신 설>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u>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u>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 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u>통신</u> 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 __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사용제한에 관하여 제11조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3조의6(당사자의 권리보호) 통 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에 따 른 당사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 제12조의3을 준용한다.

사<u>실확인자료등</u>-----

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5조의3(시정명령)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7항을 위반하여 <u>통신사실확인자료제</u> <u>공</u> 현황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 거나 관련자료를 비치하지 아니 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 편물의 <u>검열 또는 전기통신의</u> <u>감청</u>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 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 는 청취한 자
 - 2. (생략)
 - ② ~ ④ (생 략)

기15 국 이 2(자 권 권)
제15조의3(시정명령)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제16조(벌칙) ①
1
<u>검열·전기통신의 감청</u>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등의
제공
<u>_ 1 </u>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